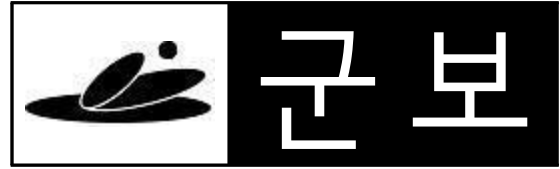


# 예 산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
람	

제677호 2022. 10. 17.(월)

## 공 고

- 예산군 공고 제2022-1809호 : 예산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 공사완료 공고 1
- 예산군 공고 제2022-1810호 : 예산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공사완료 공고 2
- 예산군 공고 제2022-1811호 :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3

## 입법예고

- 예산군 공고 제2022-1824호 : 예산군 지적재조사,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
- 예산군 공고 제2022-1846호 :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
- 예산군 공고 제2022-1850호 :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8

회									
람									

**예산군 공고 제2022-1809호****예산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 공사완료 공고**

충청남도 고시 제2020-106호(2020.3.6.)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된 예산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사업이 완료되었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8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2. 10. 5.

**예 산 군 수**

가. 사업시행지 위치 : 덕산면 신평리 121-1번지 일원

**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**

- 종 류 : 군계획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)사업
- 명 칭 : 예산군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

**다. 사업개요**

- 사업면적 : 31,645㎡(기존부지 활용)
- 처리용량 : 5,000㎥/일(증설) ※ 기존시설용량 : 7,000 ㎥/일

**라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**

- 성 명 : 예산군수
- 주 소 :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

마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: 2020. 3. 6. ~ 2022. 9. 25.

**예산군 공고 제2022-1810호****예산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공사완료 공고**

예산군 고시 제2019-141호(2019.10.17.) 대흥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(권역단위종합개발) 시행계획 승인 고시된 예산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이 완료되었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8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2. 10. 5.

**예 산 군 수**

가. 사업시행지 위치 : 대흥면 상중리 286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
- 명 칭 : 예산군(대흥)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

다. 사업개요

- 주민공용이용시설 신축 : 건축면적 394.67m<sup>2</sup>, 연면적 498.94m<sup>2</sup>
- 주차장 조성 A=50m<sup>2</sup>, 녹지 및 휴게쉼터 1식 조성

라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예산군수
- 주 소 :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

마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: 2019. 10. 17. ~ 2021. 12. 22.

예산군 공고 제2022-1811호

##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

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(공인의 등록·재등록) 및 제9조(공고), 제11조(공인의 폐기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7일

### 예 산 군 수

-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: 인증기 교체로 인한 등록 및 폐기
-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: 2022. 10. 7.(금)
-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: 2022. 10. 7.(금)

## 등록 공인 내역

구분	공인명	규격 및 서체	인영	등록사유	비고
등록 공인	민원실-예산군수인-전용	2.4cm ×2.4cm 한글전서체		인증기 교체로 신규 등록	차량
	민원실-예산군수인-전용	2.4cm ×2.4cm 한글전서체			통합 민원

## 폐기 공인 내역

구분	공인명	규격 및 서체	인영	폐기사유	비고
폐기 공인	민원실-예산군수인-전용	2.4cm ×2.4cm 한글전서체		인증기 교체로 폐기	차량
	민원실-예산군수인-전용	2.4cm ×2.4cm 한글전서체			통합 민원

예산군 공고 제2022-1824호

## 예산군 지적재조사·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예산군 지적재조사·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1일

예 산 군 수

### 1. 자치법규명

- 예산군 지적재조사·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2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「예산군 지적재조사·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예산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.
- 『일필지조사』를 『토지현황조사』로 현행화(안 제10조제4항)

- 기존 법에서 사용하던 『일필지조사』라는 용어는 필지별 소유자, 지번, 지목, 면적 등 토지의 단편적이고 기본적인 조사라는 의미로, 개정된 법에서 토지 이용현황 등의 복합적인 조사의 의미를 담은 『토지현황조사』로 용어가 바뀔에 따라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치시킴.

#### 4. 입법예고 기간

- 2022. 10. 11. ~ 10. 31.(20일간)

#### 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민원봉사과(참조 : 지적재조사팀 ☎ 041-339-7187, fax : 041-339-7197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아 래 ◇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처 :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

- 주 소 : (우)32435,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

- 전자메일 : eanvie@korea.kr

- 기타 문의 : ☎041) 339-7187, FAX 041) 339-7197

라. 제출방법 및 문의처

- 우편, 전자메일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(☎: 041)339-718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 
2. 예산군 지적재조사·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3. 관련법령 1부. 끝.



[붙임1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 : 예산군 자작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(안) 내용	의 건	비고

**[붙임2]**

예산군 조례 제 호

**예산군 지적재조사·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예산군 지적재조사·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 “예산군 지적재조사·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예산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일필지조사”를 “토지현황조사”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예산군 지적재조사·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용역·공사의 금지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<u>일필지조사</u>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·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.</p>	<p><u>예산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용역·공사의 금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 <u>토지현황조사</u> ----- ----- -----.</p>

**【붙임 1】 관계법령**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~ 3. (생략)
4. “토지현황조사”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, 지번, 지목, 면적, 경계 또는 좌표,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,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5. (생략)

예산군 공고 제2022-1846호

##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일

예 산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」

### 2. 제안이유

- 이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현실적인 실비 변상을 통해서 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마을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예산군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지원 추가(안 제6조제1항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10. 14. ~ 11. 3.(20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(참조 : 행정팀 ☎ 041-339-7205, FAX : 041-339-720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할 곳

- 우편발송 : (우편번호 32435)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,  
예산군청 총무과 행정팀
- 전자메일 : bluelake20@korea.kr
- 기타 문의 관련 : ☎(041)339-7205, fax : (041)339-7209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**[붙임 1]****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**

조례명 : 「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**[붙임 2]**

예산군 조례 제 호

**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실시”를 “실시, 예산군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”으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 (사기진작) ① 군수는 군정과 읍·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임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·상해보험가입과 체육대회 <u>실시</u>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사기진작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실시, 예산군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【붙임 1】

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 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회의수당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이장 임원단 25명 / 1인당 월 2만원 회의수당 지급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		세입	소계(A)	-	-	-	-	-
세출	통신요금	6,000	6,000	6,000	6,000	6,000	6,000	30,000
	소계(B)	6,000	6,000	6,000	6,000	6,000	6,000	30,000
□ 총 비용(A-B)			▽6,000	▽6,000	▽6,000	▽6,000	▽6,000	▽30,000

-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30,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

## 4. 재원조달 방안

- 군비 30,000천원

## 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## 6. 작성자 : 총무과장

## II 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예산소요액 : 연 6,000천원  
이장 임원단 25명 \* 20,000원 \* 12월

예산군 공고 제2022-호

##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「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4일

예 산 군 수

### 1. 자치법규명

-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
### 2. 제안이유

-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
- 예산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

나. 지원대상(안 제2조)

-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(단, 시행1차년도는 70세 이상 주민으로 함)

다. 지원내용(안 제3조)

-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지원 횟수는 1회로 규정함.

라. 지원절차(안 제4조)

- 접종기관에서 접종시 확인사항 및 접종등록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.

마. 위탁의료기관 선정(안 제5조)

- 위탁의료기관 선정 근거를 규정함

바. 위탁계약 체결(안 제6조)

- 위탁의료기관과 계약 체결 방법 및 위탁계약 조건 준수의 근거를 규정함

사. 위탁의료기관의 해지(안 제7조)

- 위탁의료기관이 계약 조건 미준수시 해지의 근거를 규정함

아. 환수조치(안 제8조)

-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비용에 대한 환수 조치의 근거를 규정함

자.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(안 제9조)

-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피해보상 규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

4. 입법예고 기간

- 2022. 10. 14. ~ 11. 3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 (참조 : 예산군보건소)

감염병관리팀 ☎ 041-339-6031, fax : 041-339-6009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아 래 ◆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처 :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

○ 주 소 : (우)32435,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

○ 전자메일 : kjs33320@korea.kr

○ 기타 문의 : ☎041) 339-6031, FAX 041) 339-6009

라. 제출방법 및 문의처

○ 우편, 전자메일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(☎: 041)339-603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 
 2.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.  
 3. 관련법령 1부.  
 4. 비용추계서 1부. 끝.

## [붙임1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(안) 내용	찬성여부		의 건	비고
	찬 성	반 대		

**[붙임2]**

예산군 조례 제 호

**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**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산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.

제3조(지원내용) ① 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에 한한다.

제4조(지원절차)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고 한다)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건기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함으로써 증명서 없이 방문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,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.

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,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탁의료기관 선정)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계약 체결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,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(이하 “위탁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탁의료기관의 해지)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
2.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제8조(환수)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



2.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

제9조(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)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대상에 관한 특례)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접종지원 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일 첫해에 한하여 만 70세 이상으로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**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**

(앞쪽)

계약목적	위탁의료기관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.		
위탁기관	의료기관명		요양기관번호
	요양기관종별		표시과목
	주소(소재지)		
	전화		전자우편주소
	대표자		생년월일
	면허종별		면허번호
	의료정보시스템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 ※ 사용 시 업체명 :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사용	
위탁계약 조건	별지 뒷면 참조		
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li> <li>▪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거짓,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,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li> </ul>		
계약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. 단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,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</li> </ul>		

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기관명 :

대표자 :

(서명 또는 날인)

의료기관명 :

대표자 :

(서명 또는 날인)

첨부서류	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보존용지(2종) 70g/㎡]

(뒤쪽)

**< 위탁계약조건 >**

위탁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군수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.  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(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)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.
- ④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‘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’을 준수한다.
- 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충청남도 예산군-○○호

## 대상포진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

- 1. 의료기관명:
- 2. 대 표 자:
- 3. 소 재 지:

귀 기관을 「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선택  
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「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」으로 지정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충청남도 예산군수

직인

**[붙임3]****관 계 법 령****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

제25조(임시 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(이하 “임시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1.18., 2020.8.11.>

1.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
2.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.

**□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**

제33조(노인의 건강증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,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영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전문개정 2010. 3. 17.>

**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**

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·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·요양 제도 등을 확립·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【붙임 4】

## 「예산군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」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: 65세 이상 예산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함에 따른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대상포진 접종 1회 지원(첫해는 70세 이상 우선 실시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합계
구분	세입						
구분	세출 백신비+ 시행비	1,140,000	592,800	96,900	96,900	96,900	2,023,500
□ 총 비용		1,140,000	592,800	96,900	96,900	96,900	2,023,500

4. 재원조달 방안 : 군비 2,023,500천원

5. 작성자 : 보건소장

#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명, 천원)

구분	인구수	미접종자	계획인원 (A)	접종비용 (1인당)* (B)	절감비용** (C)	소요예산 (A*B)-C
1차년도 (70세이상)	18,540	15,970	10,000	120	60,000	1,140,000
2차년도 (65~70세)	8,793	8,003	5,200	120	31,200	592,800
3차년도 (65세)	1,614	1,328	850	120	5,100	96,900
4차년도 (65세)	1,881	1,340	850	120	5,100	96,900
5차년도 (65세)	1,994	1,350	850	120	5,100	96,900

\* 접종비용 : 백신비 100,000원 + 시행비 20,000원

\*\* 계획인원의 30% 보건기관 접종시 시행비 1인당 20,000원 절감 산정